

「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2 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2년 9월 14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1. 제안이유

- 고흥군에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읍·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이 설치된 지역에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(안 제3조)
  -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·면에 거주 하는 노인세대 주민

○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
- 군수는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

○ 운영방법(안 제5조)

- 군수는 읍·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·지원

○ 운영비 등 지원 (안 제6조)

-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·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

3. 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9. 14. ~ 2022. 9. 19.(6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다.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6065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2. 관계법령발췌서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불세탁서비스”란 이불·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.
2. “이불빨래방”이란 세탁기,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노인세대”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.
4. “저소득 노인 세대”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·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, 저소득 노인세대, 노인 1인가구,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방법 등)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·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·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비 등 지원)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·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령 발췌서

###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#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[붙임 3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